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1 발의연월일: 2020. 12. 18.

발 의 자:윤재옥·류성걸·김상훈

정진석 · 김승수 · 윤두현

이종배・추경호・양금희

윤창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포함)에서 감면된 진료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참전유공자의 경우 신체적 기능 훼손에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을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 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 관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 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 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제7조(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 | ----의료기관(「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 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 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같다)-----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 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 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다. ② • 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u> 설> 제7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 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 료기관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신 설>

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① 국 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의 심 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 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 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